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경영희생 지원 농지매입 확대



임차료도 관행 수준으로 인하



농지 매입자금 지원단가가 10% 정도 오른다. 경영희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대상을 확대하고 임차료도 해당지역 관행 임대료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구입하려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희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은행사업 시행지침을 개선, 3월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지매매사업은 이농·은퇴농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 매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지매입자금을 최장 30년 상환조건(연 1%)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평균 농지가격 수준과 비교해 매입자금 지원단가가 낮아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논·밭 등 일반농지 취득시 지원금액을 m^2 당 1만890원에서 1만2000원으로 10.2% 인상했다. 청년농 농지 취득 및 생애 첫 농지 취득시 지원금액은 m^2 당 1만3915원에서 1만5240원으로 9.5% 올렸다.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해당 농업인에게는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뒤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농지 감정평가금액이 부채금액을 110% 초과하면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110% 초과 시에도 일정 약정 체결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임차료는 기존 매입가격 1% 이내에서 해당 지역의 관행 임대료 수준으로 인하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개선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전국 농지은행 지사(93개소) 및 시군구(읍면동) 등에 비치하고, 사업대상자에게는 전자우편, 문자 등을 직접 보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농업인의 농지 매입과 경영희생 지원지침을 개선, 보다 많은 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농지 매입자금 지원단가 변경

(기준: m^2 당, 단위: 원)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기사 프로필 보기